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6
----------	------

제출연월일: 2025. 5. 2.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협의 및 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진행 결과 기존 현금성 수당이 아닌 물품 지원으로 제도 변경 요청한바, 이에 해당 조례를 정비·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개정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 나.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지급대상의 중구 거주기간 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안 제3조)
- 라. 장수축하금 ‘지급금액’을 장수축하물품 ‘지급내용’으로 변경(안 제4조)
- 예산 범위 내 장수축하금 → 50만원 이내 장수축하물품
- 마.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 기간을 ‘100세가 도달하는 전월 말’에서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로 변경(안 제5조)

- 바. 신청 후 지급기한을 ‘송부받은 달의 15일 이내’에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안 제6조)
- 사.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 제외 조건 신설(안 제7조)
- 아.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변경함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4. 근거법규: 따로 붙임

- 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약 및 조정)
- 나.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2025년 추경예산 반영
- 13,000천원(구비)
- 나. 규제사무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족복지과-10310호, 2025. 3. 7.)
- 라. 입법예고: 2025. 3. 4. ~ 3. 24.(20일간) / 의견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장수축하금”이란”을 ““장수축하물품”이란”으로, “일정 금액”을 “사회보장적 물품”으로 한다.

제3조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5년”을 “1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급금액)”을 “(지급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어르신에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으로 한다.

제5조 중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신청서를 관할 동장”을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장”을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관할 동장”을 각각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수축하물품”으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수축하금의 전부를”을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9조 중 “장수축하금 지급 업무”를 “장수축하물품 지급 업무”로,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급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장수축하물품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상 100세가 지난 사람은 100세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u> <u>지급에 관한 조례</u></p>	<p><u>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u> <u>지급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수축하</u> <u>금</u>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 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 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p>	<p>제1조(목적) ----- <u>장수축하</u> <u>물품</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u>장수축하금</u>”이란 장수어르 신에게 지급되는 <u>일정 금액</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u>장수축하물품</u>”이란 ----- ----- <u>사회보장적 물</u> <u>품</u>--.</p>
<p>제3조(지급대상) <u>장수축하금</u>의 지 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울산광 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 내에 <u>5년</u>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 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정한다.</p>	<p>제3조(지급대상) <u>장수축하물품</u>-- ----- ----- --- <u>1년</u> ----- ----- -----.</p>
<p>제4조(지급금액) 울산광역시 중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p>	<p>제4조(지급내용) ----- -----</p>

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안내) 구청장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

--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어르신에게 5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원

제5조(신청안내) -----
----- 100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까지 장수축하물품 -----
-----.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축하물품-----
-----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② -----
-----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③ 동장 -----

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략)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신설>

④ 동장 -----

⑤ -----

-----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수축하물품 -----

제7조(지급 제외) -----

1. (현행과 같음)
2. ----- 장수축하물품 -----
3. 지급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p>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u>해야 한다.</p> <p>1. 2. (생략)</p> <p>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u>장수축하금 지급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u>해야 한다.</p>	<p><u>조례에 따라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u></p> <p>제8조(환수조치) ----- ----- ----- <u>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u> -----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9조(지급대상자 관리) ----- <u>장수축하물품 지급 업무</u>----- ----- <u>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u> ----- -----.</p>
--	--

근거법규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장수축하물품은 1인당 50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2024년 12월 기준 11명으로, 연 지원 예상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3. 작성자

- 소 속: 노인장애인과
- 직 급: 지방사회복지서기
- 이 름: 연해성
- 연락처: (052)290-3615